

교무위위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01
제정일자	1990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1990.03.01.제정 2004.12.01.개정 2012.06.27.개정 2012.08.17.개정 2014.02.01.개정 2020.09.24.개정 2020.09.25.개정 2020.10.27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교무위원회(이하 "본 위원회"라 한다.)의 구성 및 기능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삭제 <2004.12.01.>

제3조(구성) ①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5명 내외로 구성한다. <항 개정 2020.10.27.>

- 1. 위 워 장 : 총장
- 2. 부위원장 : 부총장 <호 개정 2020.10.27.>
- 3. 위 원 : 보직(부)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교직원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. <호 개정 2020.10.27.>
- ② 위원은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하며, 필요시 추천을 받지 않은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항 신설 2020.10.27.>
- ③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통괄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5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교육과정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- 2.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
- 3. 수업, 실험, 실습에 관한 사항
- 4. 학칙에 관한 사항
- 5.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<신설 2012.06.27.>
- 6. 교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
- 7. 대학 종합발전 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<신설 2020.09.24.>
- 8.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

교무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01
제정일자	1990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제6조(업무관장) 본 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위원회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위원회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위원회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위원회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위원회 규정은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위원회 규정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

교무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01
제정일자	1990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3

제1조(시행일) 본 위원회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위원회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위원회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 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